

4장. 평생교육시설의 유형



❖ 학습목표

1. 평생교육시설의 분류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.
2. <평생교육법>상 명시된 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유형을 제시할 수 있다.
3. 기타 평생교육시설의 유형을 제시할 수 있다.
4. 내 거주지 주변의 평생교육시설을 유형별로 조사하고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다.

❖ 학습내용

1. 평생교육시설
2. 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시설
3. 기타 평생교육시설
4. 평생교육시설의 변천과 현황
5. 평생교육시설 네트워크



1. 평생교육시설

- ✓ 의미
- ✓ 분류 기준

1. 평생교육시설

➤ 평생교육시설이란?

- ✓ 학습자가 모여서 함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학습실천 활동을 하는 시설

➤ 평생교육시설의 분류 기준 107

- ✓ 기준① 설립 주체 : 설립한 주체가 공적 주체인가 사적 주체인가?
- ✓ 기준② 법규상 : <평생교육법>상에 평생교육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시설인가?
- ✓ 기준③ 설립 목적 : 처음부터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인가?
- ✓ 기준④ 영리 추구 여부 : 해당 평생교육시설에서 영리성을 추구하는가?



2. 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시설

- ✓ 평생교육 전담기구로서의 시설
- ✓ 법에 명시된 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

2. 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시설

➤ <평생교육법>상 평생교육시설의 유형

- ✓ 평생교육 전담기구로서의 시설
- ✓ 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



2. 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시설 : 가. 평생교육 전담기구

가. 평생교육 전담기구로서의 시설

- ✓ 개념 :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평생교육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시설
 - ◆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음.
- ✓ 평생교육 전담기구의 유형
 - ◆ 국가평생교육진흥원 〈평생교육법〉 제19조
 - ◆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〈평생교육법〉 제19조의2
 - ◆ 시·도평생교육진흥원 〈평생교육법〉 제20조
 - ◆ 시·군·구 평생학습관 〈평생교육법〉 제21조
 - ◆ 읍·면·동평생학습센터 〈평생교육법〉 제21조의3



2. 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시설 : 가. 평생교육 전담기구

1) 국가평생교육진흥원 (<http://www.nile.or.kr/index.jsp>)

- ✓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
- ✓ 담당 기능
 - ①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기초조사
 - ②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
 - ③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
 - ④ 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과 연수
 - ⑤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
 - ⑥ 시·도평생교육진흥원 지원
 - ⑦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
 - ⑧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
 - ⑨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와 운영
 - ⑩ 그밖에 진흥원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



2. 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시설 : 가. 평생교육 전담기구

2)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(<http://www.nise.go.kr/lifelong/main.do>)

- ✓ 국가 수준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
- ✓ 담당 기능
 - ①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
 - ②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
 - ③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
 - ④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·교육 및 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
 - 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
 - ⑥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
 - ⑦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
 - ⑧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
 - ⑨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·교구의 개발과 보급
 - ⑩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

2. 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시설 : 가. 평생교육 전담기구

3) 시·도평생교육진흥원

- ✓ 관할 시·도의 전반적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
 - ✓ 담당 기능
 - ①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
 - ② 평생교육상담
 - ③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
 - ④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
 - ⑤ 그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예 :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(<https://www.cile.or.kr/>)



2. 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시설 : 가. 평생교육 전담기구

4) 시·군·구 평생학습관

- ✓ 시·군·구 기초지자체 범위의 평생교육 사업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
 - ✓ 담당 기능
 - 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
 - ②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
 - ③ 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
 - ④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과 제공
 - ⑤ 읍·면·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과 지원과 관리
 - ⑥ 그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- 예 : 천안시 평생학습관 (<http://www.cheonan.go.kr/lll.do>)



2. 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시설 : 가. 평생교육 전담기구

5) 읍·면·동 평생학습센터

- ✓ 시장, 군수, 자치구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.
- ✓ 읍·면·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 제공
 - ◆ 예 : 탕정면 주민자치센터 (<https://www.asan.go.kr/town/tangjeong/>)담당 기능



2. 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시설 : 나. 법에 명시된 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

나. 법상 명시된 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

- ✓ 개념 : 평생교육법상 명시된 기관이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시설
- ✓ 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성격과 설립형태에 따라 구분
 - ◆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〈평생교육법〉 제30조
 - ◆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〈평생교육법〉 제31조
 - ◆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〈평생교육법〉 제32조
 - ◆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〈평생교육법〉 제33조
 - ◆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〈평생교육법〉 제35조
 - ◆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〈평생교육법〉 제36조
 - ◆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〈평생교육법〉 제37조
 - ◆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〈평생교육법〉 제38조



2. 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시설 : 나. 법에 명시된 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

〈평생교육법〉상 평생교육 운영 시설	개념, 기능, 운영 특징
(1)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	• 각급 학교의 장이 학생, 학부모,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시설. 학교에 부가적으로 설치한 평생교육시설
(2)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	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한 시설.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.
(3)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	•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를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•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,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들의 종업원 해당.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
(4)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	•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특정·불특정 다수에게 원격교육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• 온라인대학, 원격대학, 사이버대학, 디지털대학 등

2. 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시설 : 나. 법에 명시된 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

〈평생교육법〉상 평생교육 운영 시설	개념, 기능, 운영 특징
(5)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	•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설치한 평생교육시설.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운영
(6)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	• 시민사회단체가 운영하고 단체의 목적과 부합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• 시민단체사회는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함.
(7)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	• 신문사, 방송국 등에 부설한 평생교육시설. • 일반 국민의 교양 증진과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 • 방송, 글쓰기 관련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
(8)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	•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. 학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

3. 기타 평생교육시설

➤ 개념

- ✓ <평생교육법>상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
- ✓ 타 법률을 근거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관에서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시설
- ✓ 기타 평생교육시설의 예
 - ◆ 각급학교시설, 도서관, 박물관, 미술관, 문화원, 문화센터, 각종 스포츠시설
 - ◆ 복지시설 : 사회복지관, 노인복지관, 장애인복지관 등
 - ◆ 직업훈련시설 : 여성인력개발센터, 인력개발센터, 직업훈련소 등



3. 기타 평생교육시설

기타 평생교육시설 유형	운영 근거와 특징
(1) 도서관	〈도서관법〉, 〈국회도서관법〉, 〈대학도서관진흥법〉, 〈학교도서관진흥법〉, 〈작은도서관진흥법〉 - 예 : 선문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s://library.sunmoon.ac.kr/
(2) 문화원	〈지방문화원진흥법〉 :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,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예 : 화도진 문화원 https://blog.naver.com/hdjcc 〈다문화가족지원법〉 :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예 : 경기도 다문화교육센터 http://www.cme.or.kr/
(3) 박물관과 미술관	〈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〉, 〈국립해양박물관법〉 - 박물관의 기능 “문화·예술·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…” “미술관이란 문화·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…” - 예 : 국립해양박물관 https://www.knmm.or.kr/

3. 기타 평생교육시설

기타 평생교육시설 유형	운영 근거와 특징
(4) 복지관	〈사회복지사업법〉 복지대상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가운데 예방과 해결의 차원에서 필요한 교육적 개입 수행 - 예 : 충청남도서부장애인사회복지관 http://www.westrc.or.kr/
(5) 직업훈련시설	〈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〉, 〈직업교육훈련촉진법〉, 〈한국산업인력공단법〉 - 직업교육훈련 : “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, 기술 및 태도를 습득·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” - 공공직업훈련시설, 지정직업훈련시설(직업전문학교, 실용전문학교 등) - 생애재설계를 통한 인생 이모작과 리모델링을 위한 평생교육 포함 〈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〉 “근로자의 평생학습지원, 자격검정, 숙련기술 장려” - 예 : 천안 YWCA http://www.chywca.or.kr/

정리

1. 평생교육시설의 분류기준을 제시하시오.
2.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 전담기구를 제시하시오
3.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을 하위유형을 을 제시하시오.
4. 기타평생교육시설(타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에서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시설)의 하위유형을 제시하시오.

